

주식회사 에이치이엠파마

제 6기(2021년) 5회 임시 주주총회 소집통지서

주주님께,

주주님의 평안과 건강하심을 기원합니다.

당사 정관 제23조에 의거 제 6기(2021년) 5회 임시 주주총회 개최를 안내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1. 일 시 : 2021년 09월 15일 (수) 오후 2시
2. 장 소 :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창룡대로 256번길 77 에이스광고타워3 401호 회의실
3. 회의목적사항
 가. 제 1호 의안 :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
 - 부여 대상자

성명	직위	주요 이력 및 담당 업무
김태억	기타비상무이사	현) (주)리드컴퍼스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전)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(KDDF) 사업본부장 전) (주)케이투비 대표이사 담당업무 : 신약 후보물질 라이선스 아웃 자문

- 부여 방식 : 신주발행교부

- 부여 내역

(단위 : 주, 원)

부여 주식수	행사가	행사 조건		비고
		주주총회 특별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및 코스닥 상장 후 2년	그 외	
54,000	14,590	5,000	국내 기술이전 완료 시 : 12,000 해외 기술이전 완료 시 : 20,000 국내 공동연구 진행 시 : 5,000 해외 공동연구 진행 시 : 12,000	각 행사기간 시작일부터 5년 내 행사 가능

나. 제 2호 의안 : 기타비상무이사 해임의 건

- 해임 대상자

성명	생년월일	업무	취임일
고준태	1967.05.07	병원 협력 자문	2019.06.03

곽진환	1961.02.06	신약 개발 및 CDI 동물 모델 연구 등 자문	2021.01.12
류동렬	1975.01.15	임상연구 수행 및 자문	2019.12.18
조성배	1979.02.16	데이터 관리 자문	2019.06.03

※ 각 당사자의 과실에 의한 해임이 아닌 당사 경영 목적상 필요에 의한 해임이며 해임 이후에도 각 담당 업무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동일함을 조건으로 기존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은 유효하도록 유지함.

다. 제 3호 의안 : 사외이사 선임의 건

- 사외이사 후보

성명	생년월일	직위	업무	임직 기간
김성호	1968. 10. 10	사외이사	회계 및 세무 자문	(초임)취임일로부터 2년

성명	주요 약력
김성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(조세재정학과) - 세무사(2007) - 국세청(1989~2000) - 연안정보통신(주) 전무(2000~2006) - (주)루디스 부장(2006~2007) - 세무법인 하나 세무사(2008~2012) - 세무법인 예람 대표 세무사(2012~현재)

라. 제 4호 의안 : 임원 퇴직금 규정 변경의 건

변경 전	변경 후
<p>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주식회사 에이치이엠 (이하 “회사”라고 한다)을 퇴임한 임원에 대하여 지급할 퇴직금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퇴임 임원과 회사와의 지속적인 유대강화를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주식회사 에이치이엠과마 (이하 “회사”라고 한다)을 퇴임한 임원에 대하여 지급할 퇴직금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퇴임 임원과 회사와의 지속적인 유대강화를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</p>
<p>제6조(퇴직금의 산정방법) 1. 퇴직금은 퇴직 시의 평균임금에 제5조의 지급률을 곱하여 산정한다.</p>	<p>제6조(퇴직금의 산정방법) 1. 퇴직금은 퇴직 시의 평균임금에 제7조의 지급률을 곱하여 산정한다.</p>
<p>제7조(지급률) “임원”의 퇴직금은 퇴임 시 임원 보수의 150~250% 중 “임원위촉계약” 상에 명시된 지급률로 한다.</p>	<p>제7조(지급률) 1. “임원”의 퇴직금 지급률은 퇴임 시 임원 보수의 100~250% 중 임원위촉계약 상에 명시된 지급률로 한다. 2. 임원 퇴직금 지급율은 임원내 직급별로 동일하며 특정 개인별로 달리 정할 수 없다.</p>
<p>제10조(지급방법) 퇴직금은 퇴직발령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본인 또는 유족에게 지급한다.</p>	<p>제10조(지급방법) 1. 퇴직금은 퇴직발령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</p>

	<p>본인 또는 유족에게 지급한다.</p> <p>2. 퇴직연금 도입 시 회사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가입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.</p>
--	--

마. 제 5호 의안 : 정관 일부 변경의 건

변경 전	변경 후
<p>제8조의2(주식 등의 전자등록) 회사는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할 수 있다.</p>	<p>제8조의2(주식 등의 전자등록) 회사는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할 수 있다. 다만, 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
<p>제9조(신주인수권)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. <이하 1~11호></p>	<p>제9조(신주인수권)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. <이하 1~11호> 12.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(신주인수권)에 의거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</p>
<p>제11조(신주의 배당기준일) 회사가 유상증자,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영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.</p>	<p>제11조(신주의 동등배당) 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 전에 유상증자, 무상증자, 주식배당 등에 의하여 발행(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)한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 배당한다.</p>
<p>제14조(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) ①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7일까지 주주의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.</p>	<p>제14조(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) ①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7일까지 주주의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. 단, 주식의 전자증권 전환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/p>
<p>제14조의2(주주명부) 회사의 주주명부는 「상법」 제352조의2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.</p>	<p>제14조의2(주주명부) ①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 ② 회사의 주주명부는 「상법」 제352조의2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.</p>
<p>제16조(전환사채의 발행)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</p>	<p>제16조(전환사채의 발행)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 ⑤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환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</p>

	지급한다.
제21조(소집시기) ①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.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,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.	제21조(소집시기) ①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. ② 회사는 매결산기마다 정기 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하고, 필요에 따라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한다.
제33조(이사의 수)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한다.	제33조(이사의 수)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하고 사외이사를 둘 수 있다.
제46조(감사의 선임)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. ②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.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. 그러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 다만,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,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,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.	제46조(감사의 선임 및 해임)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, 해임한다. ②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.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. ④ 감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,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. ⑤ 제3항·제4항의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(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 의 특수관계인,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,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)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제55조(이익배당) ③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.	제55조(이익배당) ③ 제1항의 배당은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하거나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배당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.
<부 칙> -없음-	<부 칙> 제2조(감사 선임에 관한 적용) 제46조 제3항·제5항의 개정규정(선임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)은 이 정관 시행 이후 선임하는 감사부터 적용한다.

	<p>제3조(감사 해임에 관한 적용) 제46조 제4항·제5항의 개정규정(해임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)은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선임된 감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.</p>
--	--

4.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

가. 직접행사 : 소집통지서, 신분증

나. 대리행사 : 소집통지서, 위임장, 주주본인 인감증명서, 대리인 신분증

5. 기타사항

- 코로나19의 감염 및 전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주총회장 입구에서 주주님들의 체온을 측정할 수 있으며, 이때 발열(37.5℃이상) 또는 기타 감염 의심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입장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또한 질병예방을 위해 주주총회에 참석 시 반드시 마스크착용을 부탁드립니다.

2021년 08월 30일

주식회사 에이치이엠평마
대표이사 지요셉 (직인생략)

위 임 장

본인은 를(을)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의 권한을 위임함.

- 다 음 -

2021년 09월 15일(수) 오후 2시에 개최하는 주식회사 에이치이엠파마
제 6기(2021년) 5회 임시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 행사 시 일체의 권한을
위임합니다.

주주 주소 :

주주 성명 : (인)

소유주식수 : 주

2021년 월 일

주식회사 에이치이엠파마 귀중